

2026년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(수출) 모집 공고

혁신기술 보유 국내 그린바이오 기업의 수출촉진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'2026년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(수출)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
2026년 2월 26일

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

1 모집 개요

① 지원대상 : 그린바이오기업 ※ (참고 1) 참조

- * 업력제한 없음,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상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
- *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완료된 기업 ※ (참고 2) 참조
- * 본 지원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수리된 경우에만 자금지원가능(신고서 제출 후 30일 소요)

② 지원규모 : 15社 ※ 기업당 80백만원(국고 40, 자부담 40)

기업당 총사업비 (A=B+C)	정부지원금(B, 50%)	자부담(C, 50%)	
		현금(15%)	현물(35%)
80백만원	40백만원	12백만원 이상	28백만원 이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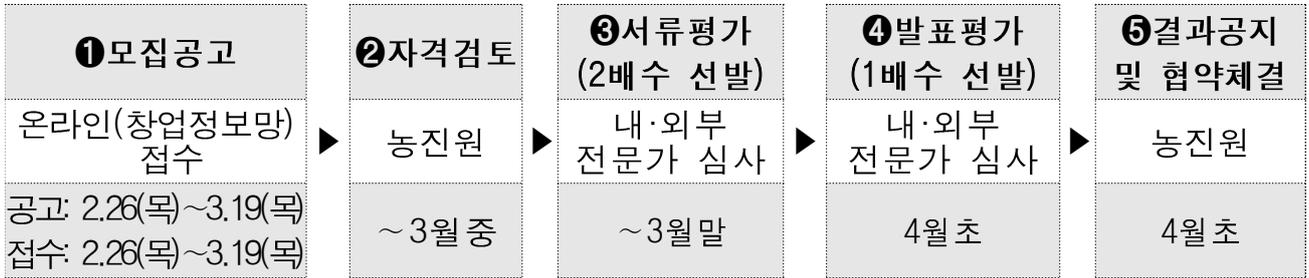
- * 자부담 중 현금(15%)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
- *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2회 이상 나눠 분할 지급하며, VAT는 기업부담임

③ 지원내용

- 사업범위 내, 지원기업에서 지원사항 선택집행 및 실비지원
- 그린바이오 제품 개발(개선) 및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성, 효능검증, 시제품제작, 공정개선 등 사업화 지원
- * (참고 5) 사업비 예산 비목 참고

④ 지원기간 : 협약일 ~ 2026. 12. 31.

⑤ 모집 프로세스



* 사업 추진 일정은 내·외부 환경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

⑥ 사업신청서 접수 및 문의

- 사업신청서 접수처 : 농식품 창업정보망(www.a-startups.or.kr)
- 문의처 : 전정남 전임연구원(063-919-1426)

2 모집 및 신청

① 모집기간 : 2026. 2. 26.(목) ~ 2026. 3. 19.(목) 15:00까지

* 모집공고 마감시간 내 접수된 건에 한하여 제출서류로 인정함.

②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 제출

- (온라인) 농식품창업정보망(www.a-startups.or.kr)에서 신청 및 접수
-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
- : (창업정보망) 회원가입 → 공고 게시물 하단 ‘접수하기’ → 신청서 작성(제출서류 업로드 포함) → 페이지 하단 ‘제출’ 버튼 클릭

구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
신청절차	회원가입	기본정보 입력	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	접수 확인/제출
제출서류	-	-	사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	-
비 고	< 농식품창업정보망 이용 주의사항 > (용량제한) 업로드 시 용량제한(약20MB)이 있으므로 주의 (접수시간) 모집마감일 마감 시간 엄수 필수			

* 기존 가입회원의 ID/PW 분실 또는 진행이 안되는 경우, 063-919-1426으로 문의

- (제출 후 수정) 마이페이지 클릭 → 페이지 하단 ‘육성기업 사업 신청 내역’ 內 ‘접수중’ 클릭 → 페이지 하단 ‘수정’ 클릭 → 필요사항 수정 후 페이지 하단 ‘제출’ 버튼 클릭

* 수정은 접수기간 내 제한없이 마이페이지에서 계속 수정이 가능함

- (제출자료 삭제) 부득이한 사유로 삭제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 이메일 (dream@koat.or.kr)로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및 요청

3] 신청 시 제출서류

구분	제출 서류	양식
필수서류 * 미제출 시 서류 평가 대상 제외	1.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	붙임 [서류 1]
	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* 대표자 및 지원사업 참여인력 모두 작성하여 제출	붙임 [서류 2]
	3. 지원기업 현물 사용 계획서 1부.	붙임 [서류 3]
	4. 사업자등록증(개인 및 법인) 1부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1부 * (주의)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,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	
	5. 기업 재무제표(2023년~2025년, 3개년) * 2025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, 추후 제출 ** 설립년도가 최근(2025년 등)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*** 개인사업자로 기업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과세표준증명원 첨부	
	6. 납세증명서(국세 납세증명, 지방세 납세증명)	
	7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2023년~2025년, 3개년) * 설립년도가 최근(2025년 등)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	
가점서류 (해당시) * 미체크 시 가점 대상 제외	8-1.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* 내 입주기업인 경우 선택 * 농식품부(25.12.1)한 지방정부(경기, 강원, 충남, 경북, 경남, 전북, 전남)의 육성지구에 입주중인 기업 * (안내) 선정평가 기간 중 지방정부의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	붙임 [서류 1]
	8-2. 2025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 기업 * (안내) 선정평가 기간 중 농진원 내부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	
기타서류 (선택사항)	9. 수출실적 증빙자료(2023년~2025년, 3개년) * 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),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(한국무역협회 발급) 등 증빙서류	
	10.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*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증 사본, 각종 인증서 등	

* (주의)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

** (주의) 필수 제출서류는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('25.12.20~'26.3.19) 이내 발급 분에 한하여 인정(이외, 가점사항 필수서류 및 기타서류 기간제약 없음)

*** 선정평가에서 사업계획서 상에 기반한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응해야 함

④ 신청자격 : 그린바이오기업 * (참고1) 참조

- * 업력제한 없음,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상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
- *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가 완료된 기업
- * 본 지원사업 협약체결 전까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수리된 경우에만 자금지원가능(신고서 제출 후 30일 소요)

⑤ 신청제외 대상
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자
-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는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*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(보조금 교부조건) 1항1호마목
-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- 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(징수유예 포함)
- 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
- 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인 경우
-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기업
-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
3

자격검토 및 선정평가

① 자격검토 :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

- 그린바이오산업 범위 사업아이템, 필수 제출서류 등 기본 신청요건을 검토함. 기본 신청요건 未충족 시 심사에서 제외함
- 가점대상
 - * 아래의 가점 요건 해당 시, 서류평가에 각 1점 적용

①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내 입주기업(1점)

- * 농식축산식품부가 지정('25.12.1)한 지방정부(경기, 강원, 충남, 경북, 경남, 전북, 전남)의 육성지구내 입주중인 기업
- ** (안내) 선정평가 기간 중 지방정부의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

② 2025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기업(1점)

- * (안내) 선정평가 기간 중 농진원 내부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 예정

② 평가절차

- 자격검토 통과기업 대상, ①서류평가 → ②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되며, 단계별 평가점수는 해당 평가단계만 적용(누적반영 아님)
- 단계별 선정결과는 각 기업의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개별전송 예정



③ 평가방법

- 서류평가 : 사업계획서를 토대로, 세부항목 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자 선정(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내외)
 - * 단, 서류평가 대상자가 최종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후 발표평가 진행
- 발표평가 :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(Q&A)을 통해 지원기업 최종 선정(최종 선정규모의 1배수 선정)
 - * 이외, 평가과정에서 부적격 사항 발생, 사업포기 등을 고려 차순위 3社(16~18위) 예비선정

○ 평가항목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	
		서류	발표
기술성(20)	· 수출대상 제품/서비스의 기술 수준	10	10
	· 핵심기술 고도화 계획의 적정성 및 발전가능성	10	10
수출가능성 (50)	· 수출 타겟시장의 적정성	10	10
	· 수출대상 제품/서비스의 수출경쟁력	20	20
	· 단기·중장기 수출전략 및 사업목표의 적정성	20	20
사업계획의 적정성(30)	· 사업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10	10
	· 사업 참여인력 구성 및 계획의 적정성	10	10
	·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	10	10
가점	·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내 입주기업(지방정부 확인)	(1)	해당없음
	· 2025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기업(농진원 확인)	(1)	
합계		100	100

④ 최종선정

- 발표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(상위 1~15위 기업)하며, 동점자 발생 시 발표심사 평가항목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팀을 우선함
- (결과통지) 홈페이지 공고* 및 사업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(E-mail)로 개별 통보
- * 홈페이지 주소: www.koat.or.kr

⑤ 협약체결

- 협약기간(지원기간) : 협약일 ~ 2026. 12. 31.
- * 지원금은 '26년 11월말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함
- 협약체결 방법 : 대면 또는 우편을 이용한 서면 체결
- * 협약체결 관련 공지사항은 최종선정자에게 추후 별도 공지함
- 기타사항 : 최종 선정기업(협약기업)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(협약종료+6개월)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
- *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

4

지원 내용

□ 사업화지원금 : 기업당 최대 80백만원(국고 50%, 자부담 50%)

총사업비 (100%)	정부지원금 (50%)	자부담(50%)	
		현금(15%)	현물(35%)
80백만원	40백만원	12백만원 이상	28백만원 이하

- * 자부담 중 현금(15%)은 협약 前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해 입금해야 함
- **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2회 나눠 분할 지급하며, VAT는 기업부담임
- 자부담 50%를 포함한 지원금이며, 각종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임
- 사업비 지급
 - (협약시점) 정부지원금의 70%(28백만원) 선금 지급
 - (사업비정산 후) 정부지원금의 30%(12백만원) 잔금 지급
- * 사업비 잔액 발생 시, 총 집행액에서 국고/자부담 비율을 고려하여 잔금 집행
혹은 잔액 환수처리
- 사업범위 내, 지원기업에서 지원사항 선택집행 및 실비지원

구 분	지 원 내 용
시험·검증	· 해외 실증 테스트 비용, 해외 시험·분석·검정비, 해외 실증목적 제품 운송비, 시험·검증 대행비 등 * 지원 불가사항 : 국내 수행 시험·검증비
인허가 취득	· 해외 인허가 심사·등록비, 심사 대행비 등 * 지원 불가사항 : 국내 인허가 취득비
수출용 제품 현지화 개선	· 규격개선, 제품 디자인(포장·라벨 등) 개선, 제품 현지화를 위한 컨설팅비, 통·번역비 등
해외 마케팅	· 리플릿, 동영상 등 홍보자료(단, 한국어 단독 사용 불가), 해외 박람회 부스 임차비용, 온·오프라인 마케팅, 통·번역 비용 등
현지 법인설립	· 해외 지사 설립 비용, 관련 컨설팅 및 대행비 등
국외여비	· 해외 진출을 위한 항공권·숙박비 실비 지원 * 지원 불가사항 : 국내여비, 일비·식비, 임직원이 아닌자에 대한 국외여비 등

① 신청 시 유의사항

- 신청기업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공고문, 매뉴얼, 안내자료 등을 준수해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화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‘신청자격’에 해당하고, ‘신청(지원) 제외 대상’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 - * 선정 완료 이후에라도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② 평가 중 유의 사항

- 발표 평가 과정에서 신청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, 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③ 선정 후 유의사항

- 선정기업이 공고문, 매뉴얼,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 확인이 된 경우, 선정취소·참여제한·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 이후 중복 등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

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·선정취소·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-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선정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 등 보고서를 한국 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형태,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함
 - 선정기업이 이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‘사업 중단 또는 사업비 회수 조치’가 있을 수 있음
- 협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간 거래가 불가함
- 최종 선정 후 협약 시 필수 제출사항으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(협약종료일+6개월)이 청구되므로 최종 선정 예정 기관은 사전에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
*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협약 및 선정이 취소됨

- ① 본 사업은 사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이 적용되며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”에 따라 처벌(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등)을 받게 됩니다.
- ②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)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- 선정기업은 협약이후 배포되는 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,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
- 선정기업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
-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비 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(현금) 부분을 입금해야 하며, 현물 자부담 부분은 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만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
-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운영하는 연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사업 기간 내에 진행되는 정기 및 수시 보고에 성실히 임해야 함
-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수시 점검,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함
- 선정기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, 사업 추진 중 실시하는 사업점검에 성실히 임해야 함
-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 연도 다음해부터 3년간 이력관리 및 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요청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함

□ 법적 정의

그린바이오 산업 범위	법령정의
<p>1. 종자</p> <p>「종자산업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자</p>	<p>“종자”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, 버섯 종균(種菌), 묘목(苗木), 포자(孢子) 또는 영양체(營養體)인 잎·줄기·뿌리 등을 말한다.</p>
<p>2. 동물용 의약품</p> <p>약사법 제2조 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</p>	<p>“의약품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.</p> <p>가. 대한민국약전(大韓民國藥典)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</p> <p>나.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·치료·경감·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·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</p> <p>다.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(藥理學的)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·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</p>
<p>3. 미생물</p> <p>「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</p>	<p>“농업생명자원”이란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, 식물,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(實物)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.</p>
<p>4. 곤충</p> <p>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</p>	<p>“곤충”이란 사슴벌레, 장수풍뎅이, 반딧불이, 동애등에, 꽃무지, 뒤영벌,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.</p>
<p>5. 천연물</p> <p>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</p>	<p>“천연물”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·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(產物) 등 생물을 기원(基源)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.</p>
<p>6. 식품소재</p> <p>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,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</p>	<p>“식품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가.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</p> <p>나.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</p>

* 관련: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(정의)

□ 분야별 예시

그린바이오 산업 범위	설명
1. 종자 「종자산업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종자	분자육종, 디지털육종 및 신육종(NBT, New Breeding Techniques) 등의 기술을 통해 우수한 새로운 품종을 육성, 증식, 보급하는 산업 [예시] 달코미 미니수박, 이상기후 대비 내재해성 종자 등
2. 동물용 의약품 약사법 제2조 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	동물치료에 사용되는 약물 또는 기타 조제용 물질로, 세균·곰팡이 등 감염유발 유기체의 성장을 억제·제거하는 백신 등의 기술 [예시] 담뱃잎 추출물 기반 돼지열병 백신, 반려동물 파보바이러스 백신, 구제역 백신 등
3. 미생물 「농업생명자원의 보존·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	작물의 생장 촉진, 병해충 억제, 토양 개선, 축산생산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농축수산업에서 사용되는 유익한 미생물 [활용분야] ▶ 생물비료: 질소고정·인산용해*, 유기물 분해를 통해 영양 흡수능력 강화, 토양환경 개선 및 화학비료의 대체로 환경오염 최소화 * 질소고정·인산용해: 질소, 인산염 등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유용한 형태로 전환시키는 과정 ▶ 바이오 농약: 항생물질·대사산물 분비 또는 미생물이 병해충에 기생함으로써 방제효과 발휘 ▶ 사료첨가제: 특정 미생물이 가축의 장내 미생물 군집을 조절하여 소화 효소 분비, 섬유질 분해 능력을 향상시켜 사료 내 영양분 흡수를 도움 ▶ 축사 환경개선: 축사 내 악취 유발 물질을 분해하여 질병예방 및 위생적인 사육환경 조성
4. 곤충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	식용, 사료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곤충을 사육하는 산업 [활용분야] ▶ 식용: 곤충을 분말화하여 만든 단백질바, 쿠키 등 ▶ 사료용: 개, 조류, 파충류 등 애완동물사료, 양계, 양식 등 배합사료 ▶ 비료용: 곤충 배설물, 사체를 이용한 친환경 비료 ▶ 소재용: 피브로인(Fibroin) 의료소재용 누에, 화장품 원료, 섬유 및 패션, 생분해성 플라스틱 소재 등
5. 천연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	식물, 동물, 미생물, 광물 등 자연계에서 얻어지는 천연물 성분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[예시] 알로베에라 추출 젤, 프로폴리스, 조개에서 추출한 항바이러스제, 병풀추출분말, 양귀비 추출물로 만든 진통제 모르핀 등
6. 식품소재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,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	자연에서 유래된 물질로 식품의 제조, 가공, 보존, 조리 등의 과정에서 식품의 품질·영양·보존성 강화 및 맛·향·색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됨 [예시] 미생물 천연색소, 천연 방부제, 천연 감미료, 3D 푸드프린팅 잉크, 식이섬유, 오메가-3 등

* 관련: 혁신성장 공동기준(6차 개정)

참고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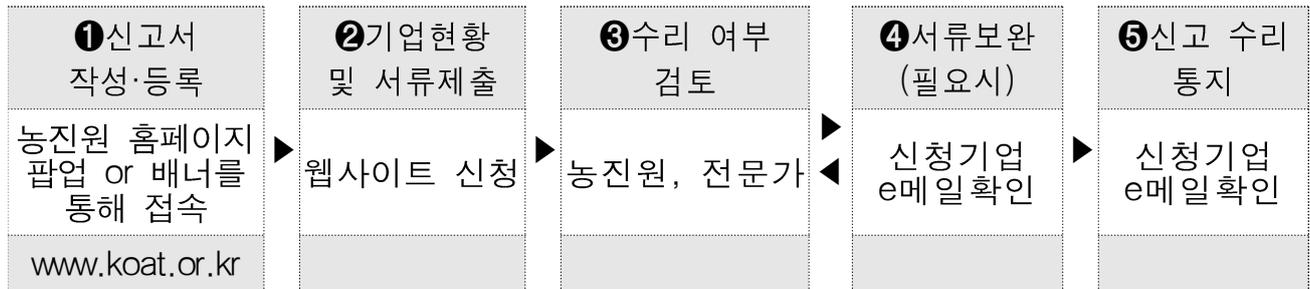
그린바이오기업 신고 방법

□ 근거: 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7조1항

*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어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□ 안내사항

- (접수시기) 상시접수
- (신고주체)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
- 신고절차



- 구비서류

구 분	제출 서류
필수서류	1. 그린바이오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(신고서)
	2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
	3.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
	4. 재무제표 등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	5-1. 사업자 등록증명(주민번호 제외) 5-2. (해당시)법인 등기사항 증명서

- (수리통지)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e메일 발송)
- (문의처)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그린바이오사업팀 063-919-1428

참고 3

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및 제출 요령

□ 제출서류 목록

구분	제출 서류	양식
필수서류 * 미제출 시 서류 평가 대상 제외	1.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	붙임 [서류 1]
	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* 대표자 및 지원사업 참여인력 모두 작성하여 제출	붙임 [서류 2]
	3. 현물 사용 계획서 1부	붙임 [서류 3]
	4. 사업자등록증(개인 및 법인) 1부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1부 * (주의)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,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	
	5. 기업 재무제표(2023년~2025년, 3개년) * 2025년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, 추후 제출 ** 설립년도가 최근(2025년 등)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 *** 개인사업자로 기업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과세표준증명원 첨부	
	6. 납세증명서(국세 납세증명, 지방세 납세증명)	
	7.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(2023년~2025년, 3개년) * 설립년도가 최근(2025년 등)일 경우 설립이후 건 제출	
가점서류 (해당시) * 미체크 시 가점 대상 제외	8-1.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* 내 입주기업인 경우 선택 * 농식품축산식품부가 지정('25.12.1)한 지방정부(경기, 강원, 충남, 경북, 경남, 전북, 전남)의 육성지구에 입주중인 기업 * (안내) 선정평가 기간 중 지방정부의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	붙임 [서류 1]
	8-2. 2025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 기업 * (안내) 선정평가 기간 중 농진원 내부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	
기타서류 (선택사항)	9. 수출실적 증빙자료(2023년~2025년, 3개년) * 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),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(한국무역협회 발급) 등 증빙서류	
	10.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*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증 사본, 각종 인증서 등	
비 고	※ 필수서류 첨부 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(한글파일 작성, 별도양식 없음)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< 농식품창업정보망 이용 주의사항 > (용량제한) 업로드 시 용량제한(약20MB)이 있으므로 주의 (접수시간) 모집마감일 마감 시간 엄수 필수	

* [필수서류] 서류명 기입 및 번호 순서대로 해당 항목에 제출(파일을 압축하여 제출)
** [기타서류] 필수서류외 별도로 압축하여 한 개의 파일로 제출

압축 파일명	1. 필수서류_지원분야명_기업명_대표자명 2. 기타서류_지원분야명_기업명_대표자명						
첨부서류 업로드 예시	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* 첨부서류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0%; 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2px;">사업계획서 (필수)</td> <td style="width: 40%; 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2px;"><input type="text"/></td> <td style="width: 30%; text-align: right; padding: 2px;">파일첨부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2px;">개인정보동의서 (필수)</td> <td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2px;"><input type="text"/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: 2px;">파일첨부</td> </tr> </table> </div>	사업계획서 (필수)	<input type="text"/>	파일첨부	개인정보동의서 (필수)	<input type="text"/>	파일첨부
사업계획서 (필수)	<input type="text"/>	파일첨부					
개인정보동의서 (필수)	<input type="text"/>	파일첨부					

<p>작성 요령</p>	<p>[사업신청서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그린바이오 분야 신청서 작성 2. 사업화 과제명 : 제안 사업화 아이템을 간략하게 표현 3. 신청인 (기업명) 대표자 - 사업자등록증(법인등기부등본)상의 업체명 동일 4. 그린바이오산업 범위 선택 5. 분량 : 양식을 유지하여 한 장에 맞춰 작성 <p>[사업계획서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청분야 및 업종의 특성에 맞게 항목별 분량을 조절하여 기술 2. 파란색 안내문구 및 안내박스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며, 작성 후 안내박스 가이드는 삭제하여 제출 3.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기술하되 기술성, 수출가능성,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기술시 객관적인 데이터 사용 및 출처 제시 요망 4. 제출 파일 중 신청서, 사업계획서 첫 장,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반드시 서명 포함 5. 사업계획서 내의 예산계획은 선정 이후 사업운영에 사용되므로 [참고 5]의 사업비 예산비목을 참조하여 계획 수립 시에 신중히 작성 6. 사업계획서의 작성분량 : 20페이지 이내(기타 참고자료 제외)
<p>유의 사항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신청서 작성 시 공란 없이 모두 기재 바람 2. 필수서류 미제출시 심사 제외 될 수 있음 3. 접수된 서류와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. 타인의 아이디어,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·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5.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

참고 5

사업비 예산 비목(수출)

비목	세부 사항	비목 정의
인건비	직원 인건비 (현물자부담으로만 사용가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술개발, 시제품 제작 등 본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임직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 (현물) 기존직원(협약 전 채용)·대표자 인건비 현물계상 가능
재료비	재료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계획서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·원료 구입비 * 총 사업비의 40% 이하 구성
기계장치	사업화에 직접적인 기계장치 (현물자부담으로만 사용가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추가 실용기술개발, 성능개선, 시험·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·설비, S/W 등 기존 구매건에 대한 현물계상 * (현물) 취득(공급)가액의 10% 이내 또는 잔존가액 이내로 작성 * (정부지원금+현금) 기계장치 구매 불가
외주용역비	시제품 제작 제품기획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완성 할 수 없는 활동(시제품 제작, 제품기획, 기술연구개발용 등)의 경우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비용 지급 * 사업 결과 달성에 필요한 부분 용역에 한정 * 기 구축된 공정에 대한 개선비용으로 사업계획서상 주력제품의 본격 시장진출 및 생산성 개선을 위한 공정개선에 소요되는 개발 비용 * 공정관련 단순 장비구입비가 아닌 공정개선을 위한 개선 개발 비용
지급수수료	전문가 컨설팅 시험분석 국내외 전시회·박람회 참가 기술이전·가치평가 지식재산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* 기술이전비, 기술가치평가 수수료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국내외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해외 운반비, 보관료, 통번역 등 * 박람회 참가 시 박람회 운영사로 최초 납부하는 비용은 임차료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(지급수수료)참가비로 간주할 수 있음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등록·유지 관련 비용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시 집행하는 비용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검토 및 회계정산 수수료 * (정부지원금+현금) 회계감사비 60만원 필수 반영(부가세 별도)
임차비	사무실, 기자재 임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 사무실(본점, 기업부설연구소), 공장(제조가공), 임차료 등 * (정부지원금+현금) 사무실, 공장 등 부동산 임차비 사용 불가 * (현물) 아이템과 관련된 사무실, 및 공장 임대료 계상가능. 단,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'부동산임대업' 표기필수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추가 실용기술개발, 성능개선, 시험·검사 등에 필요한 장비·설비, S/W 등 임차 비용
여비	국외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외출장 여비 중 항공권·숙박비 지급하며,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함 - 4대보험가입자 등 임직원 대상으로 지급
광고선전비	홈페이지 구축 포장지·홍보물 제작 디자인 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TV·일간지 등의 직접 광고홍보비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
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

구 분	세부 내용
□ 자가진단표	- 가점 및 지원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표 체크
□ 일반 현황	- 사업화과제명, 신청분야, 신청기업 등에 관한 개요
□ 사업계획서	- 1. 신청자 개요 ~ 4. 사업계획까지 관련내용 작성
I 신청자 개요	- 신청자(대표자) 인적사항, 참여인력 현황 등 작성
II 기업 개요	- 신청기업명, 기업소개, 재무현황,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작성
III 계획 개요	- 사업화과제명, 아이템 및 계획등 작성
IV (상세)사업계획	- 기술성, 수출가능성,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작성

《서류1》기업용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

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(수출) 신청서

1 자가진단표

해당할 경우 체크

가점 대상								
1	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* 내 입주기업에 해당한다.(1점) * 농식축산식품부가 지정('25.12.1)한 지방정부의 육성지구에 입주중인 기업 * (안내) 선정평가 기간 중 지방정부의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
	경기	강원	충남	경북	경남	전북	전남	<input type="checkbox"/>
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2	2025년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수상을 받은 경험이 있다.(1점) * (안내) 선정평가 기간 중 농진원 내부 검토를 통해 가점 적용 여부를 판단예정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
제외 대상								
1	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「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」을 초과한다.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
2	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정부, 공공기관의 타 지원 사업을 수행중이다.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
3	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태이다(징수유예 포함).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
4	본 공고 모집마감일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상태이다.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
5	부도, 휴·폐업기업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진행중인 상태이다.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
6	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상태이다.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
7	기타 공고내용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.							<input type="checkbox"/>

* 제외대상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, 추후 확인될 경우, 중도 협약이 해지되고 지원금은 관련법에 의해 환수 조치됨

사 업 계 획 서

작성년월일	
기업명	
대표자 (신청자)	(인)

한국농업기술진흥원 귀중

I

신청자(대표자) 개요

* 공동 대표가 있는 경우 각각 작성하여 모두 제출

성 명	(한 글)		생 년 월 일			
	(한 자)		연 령		만 세 <i>공고마감일 기준 작성</i>	
학 력	기 간		학교명	수학 상태	전공 (학 위)	기술자격 (분야, 등급)
	부터	까지				
	<i>'1332</i>	<i>'1621</i>		<i>졸업 수료 중퇴</i>		
경 력	기 간		근 무 처			담당업무
	부터	까지	근무처명	직위	주요제품	
	.	.				
	.	.				
	.	.				
관련 업종 총 근무 기간			년 개월			
기타	연구 개발실	<input type="checkbox"/> 보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비보유				
	생산 방식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생산 <input type="checkbox"/> 위탁생산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		
특기사항 (자격증, 상벌, 연수, 대외활동 등) ○ ○ ○						

II

기업 개요

1. 개요

회 사 명			사업자등록번호		
			법인등록번호		
대 표 자			설 립 일		
업 종			주 생 산 품		
매 출 액	2023	백만원	고 용 인 원	2023	명
	2024	백만원		2024	명
	2025	백만원		2025	명
투 자 실 적	창업~25년	백만원	<i>* 창업 이후 총 투자유치 금액 표기</i>		
	2023	백만원	<i>* 대표 투자처 표기</i>		
	2024	백만원			
	2025	백만원			
수 출 실 적	2023	USD(\$)	<i>* 주요 수출국가 표기</i>		
	2024	USD(\$)			
	2025	USD(\$)			
사업장 주소	(우편번호)				
사업장 현황	(자가, 임차) (공장등록, 미등록) 대지 : 평, 건평 : 평				
기 업 소 개 (요약)					
특 기 사 항 (기업의 특기사항 연혁 순으로 기재 자격증, 상벌, 연수, 대외활동 등)					

2. 주요 재무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23	2024	2025
총자산			
총부채			
자기자본			
매출액			
영업이익			
당기순이익			

* 매출액은 증빙(재무제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) 기준으로 작성하며, 증빙자료는 모두 제출 해야함. (주의) 증빙이 거짓일 경우 '26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됨

** 총자산, 총부채 등 재무제표가 미발급되어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공란으로 처리

3. 신청기업 해외진출(수출성과, 해외투자, 해외 법인설립 등) 현황

○ 해외 실증 및 인허가

구분	국가명	완료/취득 일자	대상기관	제품/서비스명
실증/인허가 가 택1	대상국가 작성	실증 완료 혹은 인허가 취득 완료일 작성	현지 실증 혹은 인허가 대상기관 작성	기업에서 실증 혹은 인허가 취득한 제품명 작성
	예시) 베트남	예시) 23.12.1	베트남 국립 비료검증원(NCFT)	

* 해외 현지 실증완료 보고서, 해외 인허가 취득 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必

○ 수출계약

국가명	계약일자	계약기간	계약대상자	계약금액	계약제품/서비스
대상국가 작성	계약일 작성		해외 바이어명	USD(\$) 기준 계약액 작성	
예시) 베트남	예시) 23.12.1				

* 수출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必

○ 해외투자

국가명	계약일자	계약대상자	투자금액	계약제품/서비스
대상국가 작성	계약일 작성	해외 투자사명	USD(\$) 기준 계약액 작성	
예시) 베트남	예시) 23.12.1			

* 해외투자 증빙자료 제출必

○ 기타성과

- 해외 법인설립, LOI·MOU 등 기타 해외진출 현황 작성

* 관련 증빙자료 제출必

4.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

구분	지식재산권명	국가명	출원·등록일	출원 . 등록번호/ 출원 . 등록자수
국내				(출원)01-1234-1234567
국외				(등록)01-1234-1234567

* 관련 증빙자료 제출必

Ⅲ

사업 계획 개요

과제명	(예시: 000식물에서 000원료 추출 기반, 000에 도움이 되는 000(제품명) 수분크림 개발)					
제품명	* 사업화 과제를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제품, 서비스 명칭					
규격	생산규모				(예상) 가격	
아이템 소개	※ 동 사업을 통해 개발 및 고도화하고자 하는 제품/기술서비스의 핵심 기능 등 주요 내용 간략히 소개(그린 바이오 영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할 것) (ex) 000식물에서 000원료를 추출한 성분이 00에 도움이되는 부분을 확인한 바, 000특허로 출원하여 화장품으로 제품화를 진행중입니다.					
이미지	※ 제품(서비스)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(이미지) 삽입					
	< 사진(이미지) 또는 제목 >			< 사진(이미지) 또는 제목 >		
보유제품 차별성 및 경쟁력	※ 해외진출에 따른 기업보유 제품 특징점, 기술력, 등 작성					
(현재 기준) 사업화 추진현황	사업아이템 발굴 조사 및 기획	제품 및 생산 시설 설계	시제품 제작	기술·공정개선 상품화 개선	양산화	출시·판매 및 홍보마케팅
		√				
※ 현재 제품-기술-서비스의 사업단계를 체크(중복 가능)하고 관련 사업화 내용 및 현황을 기재 예) 연구개발, 기술 개발, 시제품 제작 중, 개발 완료, 고도화, 제품 출시 등						
(현재 기준) 수출단계	수출준비 (현지조사)	실증 및 인허가 진행 단계	실증 및 인허가 완료	수출계약	수출계약 이행	
			√			
※ 현재 제품-기술-서비스의 수출단계를 체크(중복 가능)하고 관련 현재기준 수출현황을 기재						
'26년 사업 계획	※ 현 추진단계를 토대로 2026년 혹은 연도별 해외진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(목표, 추진방안, 예상결과 등)					

IV

(상세) 사업 계획

1. 기술성

1-1. 수출 대상 제품/서비스/기술의 차별성 및 경쟁력

※ 본 사업을 통해 수출을 하고자하는 제품/서비스/기술에 대한 정보작성
 - 제품 특징점, 수출경쟁력 등
 ※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설명박스 삭제

—

*

—

*

1-2. 핵심 기술(특허·인증 등) 보유 현황

※ 핵심 기술 보유현황을 상세히 기재
 - 해외 특허·인증 보유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·인증 보유현황과 구분하여 작성
 ※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설명박스 삭제

—

1-3. 핵심기술 고도화 계획

※ 2026년 및 중장기 핵심기술 고도화 계획 및 목표 작성
※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설명박스 삭제

□

○

—

*

2. 수출가능성

2-1. 목표시장 규모 및 전망

- ※ 본 사업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 또는 권역에 대한 시장분석 및 전망, 자사 보유 제품/서비스의 타겟시장내 현재 점유율 및 향후전망 등 작성
- ※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설명박스 삭제

—

*

2-2. 제품/서비스 수출경쟁력 수준 및 목표시장 수출준비 현황

- ※ 본 사업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/서비스의 수출경쟁력 제시
 - 현지 경쟁사 제품/서비스 대비 경쟁우위 사항, 제품특장점, 생산역량, 현지 실증 및 마켓 테스트 결과.
- ※ 현재 해외진출 준비현황(수출계약, 해외 실증, 해외 인허가 취득, 해외 IP 등)
- ※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설명박스 삭제

—

*

—

*

2-3. 목표시장 수출전략 및 목표

- ※ 목표시장의 효과적 수출성과 창출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
 - 26년도 및 중장기 진출전략, 26년도 및 중장기 목표 제시
 - 26년도 계획의 경우 주 타겟시장 목표점유율, 소비자층, 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
- ※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설명박스 삭제

—

*

—

*

3. 사업계획의 적정성

3-1. 사업계획 수립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

전체로드맵(표)

※ (본 설명박스 삭제 후 작성) 아래 내용은 단순 예시자료이며, 협약기간 내 달성가능한 추진일정으로 작성

구분	추진 계획	추진 일정									
		4	5	6	7	8	9	10	11	12	
1	타겟시장 분석										
2	현지 인허가 취득										
3	수출용 제품 현지화 개선										
4	중국 000 박람회 참가										
5	홍보자료 제작										
6	최종보고서 제출										

사업화 구체화 방안 수립

※ (본 설명박스 삭제 후 작성)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단기(협약기간 내) 목표, 중장기 목표(2~5년) 계획을 수립(단기목표(협약기간 내)를 중점으로 작성)

○

-

3-2. 사업 참여인력 구성 및 계획의 적절성

참여 인력 현황

성명	연령	현소속 직위	최종학력			담당업무 (연락처)
			학교명	전공	학위	

□ 추가 인력 고용계획

순번	주요 담당업무	요구되는 경력 및 학력 등	채용시기
1	S/W 개발	IT분야 전공 학사 이상	26. 5
2	해외 영업 (베트남, 인도네시아)	글로벌 업무를 위해 영어회화가 능통한 자	
3	R&D	기계분야 전공 석사 이상	
4			
5			

3-3.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

□ 사업비 세부내역(표)

※ 자금의 필요성,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비(정부지원금+자부담)의 사용계획에 기반한 사업비 구성내역을 작성
 ※ 비목 작성 시 공급가액 기준으로 작성하며, (참고 5) 사업비 집행비목 참조
 ※ 아래표 파란색 글씨는 예시사항으로 신청기업의 사업계획에 맞게 작성
 ※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설명박스 삭제

비 목	산출근거	금액(천원)	
		정부지원금+대응자금 (현금)	대응자금 (현물)
인 건 비	•(현물) 홍길동×참여율100%×급여2,500천원×8개월	(공란)	0
	•(현물) 홍길동×참여율100%×급여2,500천원×8개월	(공란)	0
재 료 비	•(현금) 00기자재 구매비(단가 × 수량) * 총 사업비의 40% 이하 구성		0
	•(현물) 총 사업비의 40% 이하 구성, 취득(공급)가액 기준 작성		0
기 계 장 치	•(현물) 취득(공급)가액의 10% 이내 또는 잔존가액 이내로 작성 - (취득가액) 1,000천원 × 10% = 100천원	(공란)	0
외 주 용 역 비	•(현금) 00제품 시제품 제작(단가 × 수량)		(공란)
	•(현금) 00제품 금형 제작(단가 × 수량)		(공란)
지 급 수 수 료	•(현금) 중국 ABC 박람회 참가비(단가 × 수량)		(공란)
	•(현금) A국가 인허가 취득비(단가 × 수량)		(공란)
	•(현금) 회계감사수수료 600천원 필수반영	600	(공란)
임 차 비	•(현금) 중국 ABC 박람회 참가비(단가 × 수량)		0
	•(현물) 월 임차료 × 00개월(9개월 이내)	(공란)	0
국 외 여 비	•(현금) 00국가 항공권(단가 × 0명)		(공란)
	•(현금) 00국가 숙박비(단가 × 0명)		(공란)
광 고 선 전 비	•(현금) 00국가 현지어 홍보 리플릿 제작(단가 × 수량)		(공란)
합 계		52,000	28,000

4. 2026년 성과지표

□ 성과지표(2026)

- ※ 협약기간내 목표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, 달성가능한 수준에서 작성할 것
 예) 수출액 000억원 창출, 수출용 제품개선 0건, 현지실증 완료 0건, 현지인허가 취득 0건 등
- ※ 계량지표 1개 이상 필수 작성, 비계량지표 필요시 작성
- ※ 아래 계량지표 항목 중 한가지 이상될 경우 적합판정
- ※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설명박스 삭제

구 분	지표명	2025 성과	2026 목표
계 량	· 수출액(단위 : USD)	3,000	5,000
	· 수출계약(단위 : 건수)	4	5
비 계 량			

기타 참고자료

제품(기술, 서비스) 참고 이미지, 인증 및 상장 등 기타서류 목록

- 2페이지 초과 시에 초과분량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
- (필요시) 기타서류는 선택제출사항이므로 목록만 요약하여 본 사업계획서에 기재하고 실제 자료는 별첨으로 압축하여 제출

제출서류 명칭

